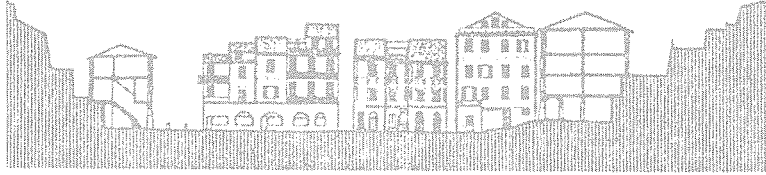


國際 設計業務 倫理規範의 필요성

펠립 엠 멘도자 푸업
Felipe M. Mendoza Fuap
필리핀 건축사협회 회장



다음 글은 필자가 제1회 아시아건축사대회에 참석하여 Felipe M. Mendoza Fuap 씨와 기타 人士의 강연을 녹음했던 것을 틈틈이 풀어 정리한 것으로서 건축관계 정책수립자와 행정담당자 및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사들에게 꼭 전달하여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을 느껴 기고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건축업무질서를 위한 倫理規範의 문제는 아시아 주변국가 건축사들이 고민하고 안타까와 하는 문제일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축계에서도 빈번히 발생했던 문제들이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기될 문제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해 열렸던 제1회 아시아건축사 대회에서는 이 문제 해결에 접근하기 위한 아시아지역 건축사들의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그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결론이 本稿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本稿가 알게 모르게 지나쳤던 문제에 대한 政府차원에서의 자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우리나라도 나름대로의 倫理規範을 지녀야 할 때가 됐다는 필자의 강력한 의사와 선배·동료 건축사와의 판단이 숨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이상 바랄 바가 없겠다.

Mr. Mendoza는 필리핀 건축사협회 회장으로 활약하고 있음을 첨언한다. (金 知 德·본회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주)유신설계공단)

1. 서문

앞서 있었던 세 차례의 본회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아시아 건축사들의 관심사를 다루었다.

가, 우리 건축사는 서양의 영향에 맞서서 아시아 고유의 주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나, 기술적 향상을 위해 교육과 연수의 再指導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다, 각 나라의 개발 사업은 자국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라, 현재와 미래의 인류의 거주 생활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건축사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어간다는 것을 깨닫는다.

국가개발 전략에 있어 건축 분야에서의 기여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정신을 담은 선언의 핵심은 아시아 건축사들이 선진국가로부터 다른 전문가들과 손을 잡고 상호 존경과 협력의 분위기 가운데서 유효 적절하게 과업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1. 현 황

대부분의 아시아국가로부터 획득해 가는 외국 컨설팅 용역과 관련된 건축 전문성에 관해 솔직하고 편견없이 짚막하게 서술을 하고자 한다.

각국 건축사협회는 고객과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건축 용역의 범위와 행동 기준을 규정하는 윤리 규범과 행동규율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건축사의 업무는 실제로 정부가 공표한 법률에 의해 다스려진다.

정부 정책의 다양성으로 인해 이런 법률과 윤리 규범, 실무 표준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일련의 지도 방침에 의거한 공동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방 사회에 맞추어 가장 윤리적인 방법이 강구되어 전문 기술을 실행해 나갈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이다.

만약 그 용역을 담당하는 건축사가 그 나라 시민이거나 거주인이거나 이 규범과 정부 규정은 건축업을 이행하는데 있어 공공이익을 보호하는데에 충분할 것이다.

가. 서양 선진국의 상황

동양의 개발 도상국과 비교해 볼 때 일반적으로 건축設計의 시작은 서양 선진국이 앞서있다. 따라서 서양 사회에서는 건축설계업에 대한 보호장치가 완벽하여 확고한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한 외국 건축사들의 입국을 규제하는 엄격한 통제 규칙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문 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통제기관들이 외국 건축사들의 비합법적 입국활동에 대항하여 자국 건축사의 권리를 강력히 옹호하는 장치들을 설치해 놓고 있다.

나. 아시아 개발 도상국의 상황

아시아 지역은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 도상국으로 분류되지만 그 상황은 다양한 것이 사실이다. 모든 국가들은 나름대로 전문 윤리규범과 외국의 건축사나 건축업자들의 입국을 규정하고 한정짓는 규제 강령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규범이나 강령은 그 나라를 후원하는 국가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실질면에서는 그 효과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제 2차 대전으로 아시아는 물질적, 경제적, 참화의 희생물이 되었는데 그 후 아시아 개발 도상국간에 이런 상황이 날카롭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들을 감수하면서 개발을 이룩하여야 하는 개발 전략 때문에 개발 도상국은 외국 정부나 세계 차관기관, 즉 대표적으로 세계부흥개발은행(IBRD)이나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곳으로부터 차관과

원조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외국의 도움이나 차관, 원조와 함께 외국 기술자문관, 경제자문관은 물론 외국 물품과 외국 장비가 들어오게 되었다. 여기서 개발도상국들은 여러 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혜국에 불리하도록 되어 있는 외국 원조가 범람하여 부수적인 불이익의 결과를 빚어내기도 하였다. 그것은 입국 그 자체조차 정당화 할 수 없는 외국 전문가들의 통제를 벗어난 활동에 기인한 것이었다.

다. 외국 건축사들이 개발도상국에 용역을 수출하는 방법.

외국 건축사들과 다른 기술 전문가들이 그들의 용역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방법은 세계 차관기관의 자문관으로서 이고 또 한가지 방법은 보조국의 정부 자문관으로서, 이렇게 두 가지다.

[다-1]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세계적 차관기관으로부터 차관을 통해 외국 자본이 도입되어 이루어지는 계획의 경우.

어떤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한 나라가 외채를 차입해야 할 경우 그 회원국에 계획담당 자문관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외국 차관기관의 정책이다. 자문관은 차관기관에의 참여도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할당된다. 그러므로 미국이나 서독, 호주, 캐나다, 일본과 같이 기금을 거액으로 헌납하는 국가의 건축사들과 다른 전문가들은 차관기관에 의해 할당율의 비중이 더욱 크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해서 이 정책에서 선진 회원국의 주요 역할은 굉장한 영향력을 지니게 된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그리고 일본 정부의 자금이 투입되어 필리핀에서 행하여진 계획들을 대충 검토해 보면 알겠지만 거의 90%가 주로 외국의 건축사들이나 동맹 기술회사에 의해 진행되었다. 차관도입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자문관 참여를 권장하는 것이 세계은행의 정책이긴 하지만 각 나라 자문관은 자국의 개발에 공헌하는데 별 중요한 역할을 하

지 못하는 경향인 것이다.

[다-2] 외국 정부의 보조로 이루어지는 계획의 경우

수혜국의 개발사업에 협력한다는 순수하고 고귀한 목적에서 보조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때때로 보조라는 형식의 용자로 수행되는 어떤 계획의 양 국가간 補助交換證書에는 전문설계용역, 건축용역, 재료, 장비 등을 보조국이나 차관도입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는 경우가 있다. 보조의 목적은 증서에 명기된 바대로 고귀하게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작업은 또 다른 결과를 드러나게 된다. 즉 보조가 실체화 되기 전에 차관제공 국가의 전문가들은 보조절차가 진행되고 허가되는 단계에서 보조제공국의 용역이 필요하게끔 교묘한 계획을 짜, 비록 전망있는 수혜국이라 할지라도 희생시켜가면서 어떤 용역이든지 그 보조에 맞출 수 있는 것이면 먼저 차지해 버린다.

그런 교묘한 계획으로 인해, 전망이 밝은 보조 수혜국의 정부는 보조받을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 자연히 보조를 받은 나라로부터 전문가들의 용역을 받아 들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선택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보조제공국의 건축사들은 다른 관련 전문가들과 고문용역에 대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작업은 주로 보조제공국과 계약을 맺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보조에 의한 계획자금은 불필요하게 증가하여 순 보조액은 상당히 감소하게 된다. 필리핀의 건축사들이나 관련 전문인들은 단지 하청자로서 매우 낮은 임금을 받을 뿐인데 계약에 의해 15년 동안의 시민 부담을 예상해야 하고 잘못된 실수가 발생하리라는 것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게다가 일단 그 계획이 끝나면 수혜국들은 수입된 자재나 장비, 외국 동원 인력에 대해서는 수혜국이 유지부담을 지는 것으로 하고 끝나버린다. 지역 개발을 협조해 주리라던 고귀한 목적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이다.

보조 명목하에 받은 실질 용자금은 수입 인력과 자재와 장비비로서 보조제공국으로 되돌려 주는 격이되므로

외국 자본에 의한 그 계획의 기대된 복합 효과에서 나오는 이윤은 無로까지 감소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富의 역류 현상이라 할 수 있다.

3. 지역 개발의 함축된 의미

앞에 지적한 예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개발도상국들이 외국으로부터 차관이나 보조를 제공받게 계획(안)을 시행할때 수석 전문가를 자기나라 자문관으로 기용하지 못하고 외국 자문관을 써야 한다는 문제이다.

이것은 수혜국 전문가들이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님은 전술한 바와 같다. 여기에 貧者는 단지 복종하고 따라야하는 반면 富者는 관리와 명령을 한다는 잘못된 윤리가 성립되게 되는것이다. 결국 貧者는 경제적 게임의 희생물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의한 또 다른 의미

1. 기술은 개발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발도상국이 외국 기술에 의지해야 한다면 그 나라의 과학자나 기술자들은 그들 나라의 개발에 동참할 기회를 잃음으로써 나라의 성장은 그만큼 지연 당하게 된다.

2. 외국 자문관의 유입은 기술 유입을 구실로 정당화 되는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유입을 통한 기술 양도로 그 나라에 기술 지식이 이전 되어야 하고, 가능한 한 가장 짧은 기간에 타국에 대한 기술의존도를 줄이게 해줌으로써 충분한 기술적 자립 능력을 배양토록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기술유입은 수혜국이 필요로 하되 아직 가능하지 않은 특별한 종류의 기술이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필리핀의 경우, 한 좋은 본보기가 있다. 학교 건물과 연구소, 저장 건물을 건축하는데 차관과 보조에 의한 계획(Project)이 있었는데 그 댓가는 외국 자문관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필리핀 건축사들과 기술자들에게 그 댓가가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필리핀의 건축사들과 기술자들이 기능적이고, 견고한, 그리고 필리핀의 문화와 환경및 경제와 잘 부응한다고 판명되는 유사

한 계획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그 진행 과정에서 풍자스러운 것은 외국 자문관들이 국내 전문가들이 제공한 대부분의 기술과 정보에 의지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기술의 공여는 불필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기술의 공여나 이전은 수혜국이 필요로 하되 아직 익히지 못한 기술이어야 하며 기술의 공여가 행해진다면 수혜국 자체에 의해 먼저 융합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수혜국 기능자에게 훈련과 교육이 배풀어져야 하는 것이다.

3. 최상의 기술 용역을 공여해 주는 외국 건축 설계회사들은 늘 自國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기술·장비와 자료를 지정한다. 수혜국의 현재 지역 기술과 장비와 자재등 여러 여건을 신중히 참작하지 않고 계획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기도 하며 보조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최대한으로 짜내 거두어 가려고 경솔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로 인해 외국 자문관이 제공한 용역의 산물은 수혜국의 물질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완전히 적합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4. 서양 설계자에 의한 건축물은 공간 조정과 형태의 연결상 개념이 서양적이고 취향이 또한 서양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들 고유의 예술과 문화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나보여 일반 국민들이나 국내 건축사, 설계전문인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영향으로 수혜국은 그 나라만이 지닌 고유한 주체성을 영원히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즉 수혜국 국민들은 자기 나라에서 이방인이 되는 셈이다.

4. 다른 보도와 소감들

본인이 피력한 소감은 단지 필리핀인으로서의 독자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의견은 1977년 6월 6일, 과 7일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에서 개최한 ULACAA 지역 회의에서 스리랑카 건축사 협회가 제시한 해명서와 같이 친애하는 아시아인들에 의해 여러가지 형태로 수차례 표명된 바 있다.

가. 유사한 주장은 유엔총회 석상

에서 다른 유엔 기술회의에 강력히 표명되기도 했다. 그 결의문에서 몇몇 관계되는 조항을 소개한다.

(가) 모든 국가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유엔 헌장.

第1條 : 모든 국가는 어떤 형태로든 외국으로부터 간섭이나 강압, 협박이 아닌 각 나라 국민의 자의에 맞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체계와 경제적 체계를 선택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

第2-b條 : 각 국가는 국가 관할권내에서 환·국가 주식 회사의 활동을 규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그 활동이 그 나라 법률과 규칙, 질서에 적합한지, 그 나라의 경제와 사회정책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도 또한 갖는다. 환·국가 주식 회사는 주인공의 국가적 문제에 끼어들 수 없다.

第7條 : 각 국가는 그 나라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개발을 도모하는데 우선적 책임을 진다. 결국 각국은 개발을 위한 수단과 목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원을 충분히 유통시켜 이용할 수 있는 발전적, 경제적, 사회적 개혁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온 국민의 참석과 더불어 개발의 이익을 보장하는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모든 국가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으로 그와 같은 유통과 사용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에 협력할 의무를 지닌다.

第13條의 2 : 개발도상국이 자국의 경제와 필요에 적합한 형식과 절차에 맞추어 자국의 이익을 위한 현대 과학과 기술을 성취하거나 기술을 도입하고 토착 기술을 창조하는 데에 모든 국가는 개발도상국의 이같은 추진 사업에 부응하여야 한다.

第13條의 3 :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도상국이 그들의 과학적, 기술적 하부 구조와 과학적 연구, 기술적 활동을 수립, 강화, 개발하는데 선진국은 협력해야 한다.

(나) U.N Habitat 회의. 캐나다 밴쿠우버. 1976년

[1a] 인간은 그들의 환경과 문화

실체를 창조한다. 인간은 그들의 환경 조성에 함께 했던 그 장소에서만 그들의 사회적, 인간적, 문화적 균형을 찾을 수 있다.

[3c] 미래의 건축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소위 천재로 인정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양심적으로 발굴해 내어 인정하고 수락하는 것이 필요하다.

[3d] 현대 건축과 환경 설계는 최종적으로 사용주가 되는 사람들과의 합의와 융합, 그리고 만족할 만한 미학적 표준과 그들의 문화적 요구에 대한 호응과의 합의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

[4] 유사한 표현으로, 공간해결이라는 우리 대다수의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해 소수에게 적용되도록 고안된 모델을 찾았던 종래의 방식을 이제부터는 받아들일 수 없다.

[6] 각 사람은 그들의 공간을 잘 배합하여 각각의 삶을 충족시키는데 기여하는 환경속에서, 또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잘 살려주는 환경속에서 살며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다) 다음은 1978년 9월 12일 아르헨티나 브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UN 회의에서 개발도상국간의 기술 협력에 관한 회의시 채택된 브에노스 아이레스 행동 계획안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건의 7] 개발도상국의 더욱 거대한 기술적 自力의 시도를 요구한다. 즉 다음과 같은 것을 강조한다. “개발도상국은 그들 나라의 특별한 요구와 가치, 그리고 자원 기증에 적합한 과학적 기술적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 그리고 전문적 기술 수준과 통합, 수련과 연구를 향상시킴으로 인하여 기술과 자문 용역면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가능한 최대로 발휘케 해야 한다.

(다) 공공 차관과 자문 용역에 관하여 더욱 자세히 분석되고 명시된 몇 가지 연구와 의견서가 있다. 최신의 의견서중 하나는 통신 연구 센터가 작성한 “지역 용역 업무: 전문가들의 재인식”이란 책이다.

거기서 몇몇 관계되는 부분을 소개

한다.

1. 외국 자문관들은 특히 복잡한 일을 다루는데 있어서나 특수기술을 요하는 대형 전문산업체를 운용하는데 있어 훨씬 훌륭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들은 넓은 경험과 세계 시장에 관한 정보 그리고 최신 기술을 요하는 전문 구성원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자문관들은 때로 충분한 경험을 갖추지 못하고 수혜국에 적합하지 않으며 고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국내 전문가는 그 지역 여건에 외국 자문관보다 훨씬 더 정통하다. 따라서 보다 광범한 지역에서 스스로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있다. 또 국내 전문가들이어야만 지역 연구가 용이하고,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투입을 잘 연결해 줄 수 있으며 계획과 기능면에서 그 나라 고유의 투입 방식에 적합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국내 전문가와 외국 자문관의 공동 작업이 더 효과적인 지역도 있다.

외국과의 공동 작업은 기술적 숙련과 능숙을 요하며 그 기술을 촉진하는데 활력적 역할을 한다. 외국 자문기관의 필요성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결정을 하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개발도상국 사이의 특별한 여건을 고려한 윤리규범을 공식화한다면 국내 전문가들의 인식을 확실히 할 수 있는 효과적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조치로, 언제든지 소유권은 자국의 고용 자문관이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자문 역할 담당자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구들을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

2. 이 의견서에는 덧붙여 다음과 같은 것이 언급 되고 있다.

“현 상황은 전문 분야에 대한 해결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정치적, 행정적 해결을 요구한다.”

결 론

1. 외국 회사의 자문 능력
선진국의 대 자문 회사는 그들이 지닌 방대한 자원과 경험으로 인하여,

개발도상국의 건축사들과 관계 전문가들과 비교해 볼 때 커다란 계획을 훨씬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내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계획) project 가 증명해 주듯이 매개물이나 소규모 계획은 개발도상국의 건축가와 전문가들에 의해 훨씬 훌륭하게 다루어 질 수 있다.

2. 기술 양도의 본질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때 개발도상국에 기술 양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기술 양도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기 위하여 자치적으로 발휘하는 각 나라 고유의 기술능력의 개발이라는 근본적 원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순수한 의미의 기술 양도는 개발도상국의 독립적 과학적 기술 기반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기술 양도로 인해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기능과 기술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된다면가 하여 한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개발이 방해 받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와 같은 장애물을, 그 나라 국민이 지닌 기술적 능력을 창조적으로 발휘할 밑거름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개발 과정을 한 걸음 추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도덕적 강령

만약 수혜국의 성장을 고무하는 차관과 보조의 목적을 존중하여 거기에 의미를 부가해야 한다면 전문 용역을 자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더욱 분명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그것은 또한 나아가 경쟁이나 각자의 소신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전문가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도덕적 강령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들의 생활속에서 각자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가며, 상호간의 조화를 이루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살수 있도록 해야 한다.

ARCASIA 는 이런 현황을 통찰한 가운데 1981년 3월 마닐라에서 공동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 모임에서 ARCASIA 는 컨설팅 용역에 관한 국제 윤리 규범의 공포를 제안하였다. 이 윤리 규범은 1981년 8월 7일 홍콩

에서 개최된 ARCASIA 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6. 건 의

여기서 본인은 우리 동료 건축사들과 선진국과의 관계가 좀 더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위원회에 건의하는 바이다.

[조치 1] 아시아 모든 국가의 건축사협회가 그들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이번 제 1 회 아시아 건축사회의에서 컨설팅 용역에 관한 국제 윤리 규범을 정식으로 채택할 것.

[조치 2] 1985년 1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있을 국제건축사연합회(UIA)에서 컨설팅에 관한 국제윤리규범을 정식으로 채택하겠다는 결정을 제시할 것. 그래서 UIA 모든 회원들이 채택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할것.

[조치 3] 차관과 보조를 받고 있는 수혜국 정부뿐 아니라 세계은행과 아시아 부흥개발은행, 개발자금을 보조하는 세계적 차관기관에게 차관조건에 관한 조약과 자문관 고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수출 재정 합의 를 재검토하겠다는 결정을 제시할 것.

그 이유는

가. 외국의 차관과 원조로서 설립된 계획(Project)을 잘 다룰 줄 아는 유능한 건축사들과 전문가들이 국내에 있을 경우 그들에게 수석 자문관으로서의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조약을 규정하여 국내 건축사와 전문가의 권리를 인정하고

나. 그 국가의 건축사가 수석 고문관인 경우에 대부 기관이나 보조국은 재정 보조가 적절히 잘 활용되고 있는지, 계획이 조약에 의해 잘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기술 조력자를 파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본인은 이런 조치가 채택됨으로써 모든 기술 전문가를 포함한 아시아 건축사들이 그들 국가의 개발을 위해 끊임 없이, 그리고 충분히 그들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받기를 열렬히 기원하는 바이다.